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7일 13시 04분



목차

목차	2
의료 및 재활지원	4
장애인 의료비지원	4
지원대상	4
지원내용	4
지원방법	4
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	4
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	4
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	5
산출 보험료 경감	5
장기요양보험료 경감	5
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	5
지원대상	5
지원내용	5
신청방법	5
장애검사비 지원	5
지원대상	6
지원내용	6
신청방법	6
발달재활서비스	6
지원대상	6
지원내용	6
신청방법	6
언어발달지원	6
지원대상	7
지원내용	7
신청방법	7
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	7
지원대상	7
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	7
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표	8
교부 우선 순위	9
신청장소	9
보장구 건강보험급여(의료급여) 적용	10
지원대상	10
지원내용	10
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	10
기타사항	10
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	11
지원대상	11
지원금액	11
신청방법	11
제출서류	11
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	11
지원대상	11
지원금액	11
신청방법	12
제출서류	12
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	12
지원대상 및 금액	12
추진체계	12
신청방법	12

▶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별 입수 신청 시 특례석종

-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
-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에 한해 연령·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
-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
▶ 산출 보험료 경감

- 지원대상 :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
- 지원내용
 - ▶ 장애등급 1~2급인 경우 : 30% 감면
 - ▶ 장애등급 3~4급인 경우 : 20% 감면
 - ▶ 장애등급 5~6급인 경우 : 10% 감면
-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
▶ 장기요양보험료 경감

-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 1~2급
- 지원내용 : 장기요양보험료의 30% 감면
-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
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

▶ 지원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

▶ 지원내용

-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
 - ▶ 지적장애, 자폐성 장애, 정신장애 : 4만원
 - ▶ 기타 일반장애 : 1만5천원
- ※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

▶ 신청방법

읍·면·동주민센터에 신청

장애검사비 지원

📌 지원대상

-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,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
-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

📌 지원내용

- 진단비,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

📌 신청방법

-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신청

발달재활서비스

📌 지원대상

- 연령기준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언어, 청각, 시각 장애아동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- 기타요건
 - ›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,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(검사자료 포함)로 대체 가능

📌 지원내용

- 매월 14만원~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
- 언어, 청능, 미술, 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

📌 신청방법

-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신청

언어발달지원

📌 지원대상

- 연령기준 : 만 12세미만 비장애아동(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뇌병변, 자폐성 등록장애인)
-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20% 이하

📌 지원내용

- 매월 16만원~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
- 언어발달진단서비스, 언어·청능 등 언어재활서비스, 독서지도, 수화지도

📌 신청방법

-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신청

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

📌 지원대상

- 장애종별 :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발달 언어장애인
-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📌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

- 육상예방용 방식 및 커버 : 1~3급 심장 장애인
 - 음성유도장치 : 시각장애인
 - 음성시계 : 시각장애인
 - 시각신호표시기 : 청각장애인
 - 진동시계 : 청각장애인
 -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(보행차) :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-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: 1~3급의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- 식사도구, 젓가락 및 빨대 : 1~3급의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- 머그컵, 유리컵, 컵 및 받침접시 : 1~3급의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- 접시 및 그릇 : 1~3급의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- 음식 보호대 : 1~3급의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- 기립훈련기 : 1~3급의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- 헤드폰 : 청각장애인
 - 영상 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 : 시각장애인
 - 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 : 시각장애인
 - 목욕의자 :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- 녹음 및 재생장치 : 시각장애인
 - 휴대용 경사로 :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- 이동번기 : 1~3급의 지체·뇌병변 장애인
 - 미끄럼 보드,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: 1~3급의 지체·뇌병변·심장·호흡 장애인
 - 장애인용의복 : 지체·뇌병변·심장·호흡 장애인
 - 휠체어용 탄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엑세서리 : 1~3급의 지체·뇌병변·심장·호흡 장애인
- (<http://www.yeosu.go.kr>)

※ 품목의 범위: 벨트류, 덮개류, 거치대류

-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: 지체·뇌병변 장애인
- 환경조정장치 : 1~3급의 지체·뇌병변 장애인
- 대화용장치 : 뇌병변·발달·청각·언어 장애인

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표

장애유형	지원품목	지원기준	내구연한
지체·뇌병변	목욕의자	60만원/인	5년
	휴대용 경사로	30만원/인	8년
	보행차	20만원/인	5년
	좌석형 보행차		
	탁자형 보행차		
	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(변기용 팔지지대)	25만원/인	5년
	기립훈련기	150만원/인	3년
	이동변기	60만원/인	5년
	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	5만원/인	1년
	식사도구(칼,포크),젓가락 및 빨대		
	머그컵, 유리컵, 컵 및 받침접시		
	접시 및 그릇		
	음식보호대		
	환경조정장치	40만원/인	3년
	미끄럼 보드,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(트랜스퍼 보드, 트랜스퍼 매트, 회전좌석)	35만원/인	4년
	안전손잡이	10만원/인	5년
	장애인용 유모차	150만원/인	5년
	피더시트(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기구)	80만원/인	3년
	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	5만원/인	3년
	장애인용의복(이동기기용 우의 및 방한 담요, 개조된 신발 및 옷)	15만원/인	2년

지체·뇌병변· 심장·호흡기	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(벨트류, 조종장치용 덮개류, 거치대류)	10만원/인	5년
	전동침대	120만원/인	10년
	소변수집장치	120만원/인	3년
	개인 비상경보 시스템(낙상알림기)	55만원/인	5년
심장	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	35만원/인	3년
	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		
시각	녹음 및 재생장치	50만원/인	3년
	영상확대비디오 (독서확대기)	80만원/인	2년
	문자판독기 (광학문자판독기)	80만원/인	
	음성유도장치 (음향신호기리모콘)	3만원/인	
	음성시계		
청각	시각신호표시기	15만원/인	2년
	헤드폰(청취증폭기)	12만원/인	
	진동시계	5만원/인	
뇌병변·지적· 자폐성·청각·언어	대화용 장치	60만원/인	4년
	대체입력장치(스위치)	5만원/인	3년

교부 우선 순위

-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
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- 재가장애인

신청장소

읍·면·동주민센터에 신청

보장구 건강보험급여(의료급여) 적용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- 건강보험대상자 :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
- 의료급여수급권자 :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·고시액·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

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

분류	기준액	내구연한(년)
지체장애이용 지팡이	20,000	2
목발	15,000	2
휠체어	480,000	5
의자·보조기	유형별로 상이	유형별로 상이
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		
안경	100,000	5
돋보기	100,000	4
망원경	100,000	4
콘택트렌즈	80,000	3
의안	620,000	5
흰지팡이	14,000	0.5
보청기	1,310,000	5
체외용 인공후두	500,000	5

기타사항

- 「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서」제출시 첨부서류
 - 의사발행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.
 -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·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.
 - 지팡이·목발·휠체어(2회이상 신청시)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
 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('11.9.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)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
- 「보장구급여비지급 청구서」제출기관 ① 건강보험 : 공단 ② 의료급여 : 시군구청

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

📌 지원대상

-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(임신기간 만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포함)
-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

📌 지원금액

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

📌 신청방법

- 신청권자 :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
- 신청접수기관 :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·면·동주민센터
-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신청

📌 제출서류

- 신청자 신분증(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)
- 신청서
- 출생증명서,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의료기관 발생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·사산일 경우) 중 1부,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

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

📌 지원대상

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

📌 지원금액

-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
 - 심한 장애(기존 1~3등급): 100만원
 - 심하지 않은 장애(기존 4~6등급): 70만원

신청방법

- 신청권자 :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
- 신청접수기관 :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·면·동주민센터
-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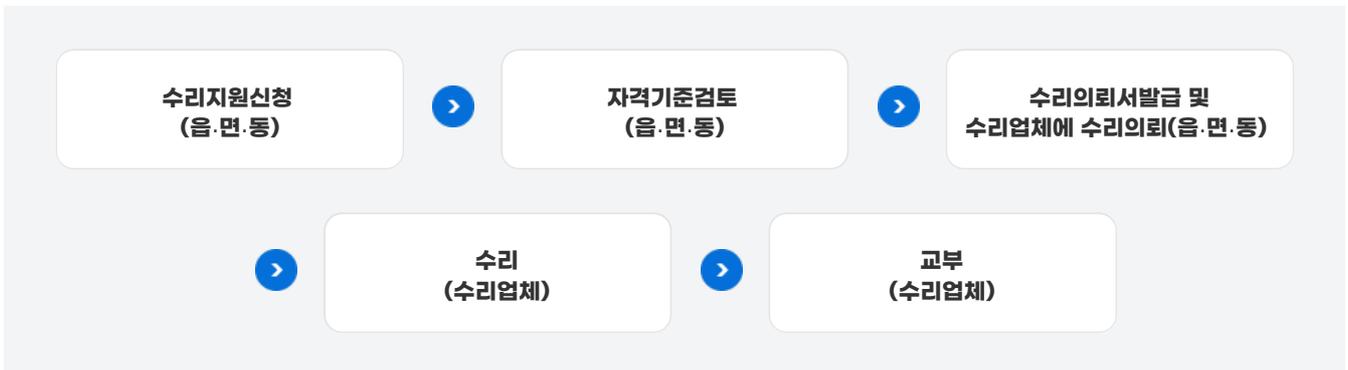
- 신청자 신분증(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)
- 신청서
- 출생증명서,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

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

지원대상 및 금액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
-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%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5만원까지 지원
- ※ 장애인 보장구 출고당시 장착된 부품 원칙,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, 장비 등은 제외

추진체계



신청방법

장애인 또는 보호자(대리인)는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서식에 의해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신청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